

성실한 재고가액 통지의 중요성

이 순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8년 4월 30일, 신청인 H와 피신청인 J사이에 신청인 H를 피보험자로 하고,

- 보험 목적 : 피보험자가 보관중이거나 운송중인 원엽·포장엽연초 및 포장재료
- 보상한도액 : 미화 5백만불
- 보험기간 : 1988년 4월 30일 ~ 1989년 4월 30일
- 첨부특약 : Premium Adjustment Clause (이하 PAC로 침함) 및 Inland Transportation Floater Clause이하 (ITF라 칭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종합보험 계약 (American Inland Floater Policy Form)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8년 7월 13일 낙뢰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H의 제품창고에 보관중이던 엽연초 및 포장재료 등 동산이 소실되어 금 30억 6천 5백 57만 5천 2백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서로의 의견

신청인은

① 본건 보험계약체결시 ITF 제4조(매월 15일까지의 보고조항)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당사의 매월보고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PAC 제3조(Value Reporting Clause : 가액통지조항) 및 제4조 (Full Reporting Clause : 전액통지조항)도 당연히 삭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② PAC(보험료정산특약)는 보험료정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담보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보고기간내에 재고가액에 대한 월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지연통보된 재고가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독촉이나 이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접수하여 왔으므로 이는 바로 재고가액통지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1988년 4월 1일부터 1988년 6월 31일까지의 재고가액(4월 : 미화 1천 61만 9천 9백 30불, 5월 : 미화 1천 49만 5천 1백 27불, 6월 : 미화 8백 51만 3천 8백 24불)을 관행에 따라 1988년 8월 4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화재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① ITF의 목적은 운송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PAC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또한 PAC 제3조 및 제4조의 효력은 ITF 제4조와는 무관한 것이며

② 피보험자가 가액통지조항에 규정된 시기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재고가액통지를 그대로 접수하여 온 행위가 손해발생시 전액통지조항을 적용할 권리의 포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재고가액보다 미달되는 가액을 통지하여온 사실을 알았다면 이 통지를 접수하였을리 없었으므로 단순히 시기에 늦은 통지를 접수하여 온 행위에 비례보상원칙의 적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1988년 8월 4일자의 재고가액통지는 사고발생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PAC의 제4조(전액통지조항)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손해 발생전에 최종통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바 본건 사고발생전에 최종적으로 1988년 6월 3일 통지한 1988년 3월 31일자 재고가액(미화 5백 41만 2천 9백 12불)에 대한 동일자의 실재고가액(미화 1천 1백 40만 7천 9백 99불)에 대한 비율로 비례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의

본건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각 하하였다.

「.....① 이 보험과 같이 월별재고가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특별약관을 첨부한 보험계약에서는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제의 재고가액을 사실대로 성실히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한 확정보험료의 산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보다 낮은 가액을 통지하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② 사고 발생시에는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할 것으로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대로 비례보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맷는 글

완·반제품, 원·부자재 등과 같이 재고수량 및 가액이 향시 변동하는 유동자산을 일반화재보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첫째, 완전담보를 받기 위해 장래 예측되는 최고재고가액을 보험금액으로 부보하여야 할 것이나 재고가액이 최고로 될 때를 제외하고는 초과보험이 되어 보험가입자 입장으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둘째, 예상평균재고로 부보할 경우 어느 일정시기에는 일부보험이 되므로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되어 완전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셋째, 일정액을 보험금액으로 설정하고 재고가액이 일정액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단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으나 단기계약은 요율이 높을 뿐 아니라 사무절차의 번잡등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동하는 재고품(Stock)에 대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고 실손보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고가액통지보험(Reporting Form Declaration Policy)이라는 특수한 계약방법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지보험의 방식과 보상방법 등은 각국의 약관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기술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선 통지보험은 변동하는 재고가액 그 자체를 보험금액으로 보기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항상 보험금액과 가액이 일치하는 전부보험이 되므로 사고발생시 손해액 전액을 실손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금액은 재고가액과 연동하여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 자기의 책임한도액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상한도액(일본의 경우 전보금 제한액이란 용어를 쓰고 있음)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액(보험금액)이나 손해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해도 동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일정비율 상당액(75%)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치(잠정)보험료(영문 PAC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아닌 잠정금액을 설정하여 잠정보험료를 산출)를 미리 지

급하되, 보험기간만료후 계약자가 통지한 재고가액을 기초로 평균재고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실거래에 있어서는 예치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보상한도액을 과소책임으로써 사고시 보상한도액초과분의 면책 또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고가액에 대한 보험료추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상한도액을 적정하게 책정하거나(보상한도액을 책정함에 있어 적정한 위험관리기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재고 급증시에는 이를 인상조정한다면 문제될 수 없다. 보험료수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재고시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동안의 평균재고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하겠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PAC 제4조에 의하면 최종통보가액(Last Reported Value)의 그당시 실제 재고가액(Actual Value)에 대한 비율에 손해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전에 최종통보한 재고가액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1988년 3월 31일자 재고가액이 명백하므로 위조항에 따라 동시점에 있어 통보가액의 실제재고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보상하도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6)